

■ 첨단복합단지(연구단지)(변경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IV, V	연	용 도	<p><허용용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<별표1>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~나목 - 판매시설 중 다목의 2) - 교육연구시설 중 나~다목, 마~바목 - 공장 및 관련 부대시설(연구시설이 건립되는 경우에 한함) - 창고시설 중 가목 -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~나목, 라목, 바목, 아목 - 발전시설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함 * 태양광 발전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시설, 공장 등 주 목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만 허용 *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(LNG 등)는 외부 관로를 통해 공급받는 시설로서 발전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 방식 또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이 설치되는 블루수소 방식만 허용 <p>•주용도(교육연구시설, 공장) 외 시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(지하층 포함)의 30% 미만으로 허용</p> <p><불허용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허용용도이외 용도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		건폐율	•60%이하
		용적률	•200%이하
		높 이	•5층이하
		배치 및 건축선	<p><건축한계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도로변 : 3m •도로와 접한 경관녹지변 : 10m
		형 태 및 외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에 있어서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. •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외부색채중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하며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.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.

■ 첨단복합단지(산업연구단지)(변경)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
V	산	용 도	<p><허용용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<별표1>에 의한 다음의 용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~나목 -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, 너목 - 판매시설 중 다목의 2) - 운수시설 중 다목 - 교육연구시설 중 나~다목, 마~바목 - 공장 및 관련 부대시설 - 창고시설 중 가목 -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~나목, 라목, 바목, 아목 - 발전시설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함 * 태양광 발전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구시설, 공장 등 주 목적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만 허용 *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(LNG 등)는 외부 관로를 통해 공급받는 시설로서 발전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 방식 또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이 설치되는 블루수소 방식만 허용 <p>•주용도(교육연구시설, 공장)외 시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(지하층포함)의 30%미만으로 허용</p> <p><불허용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허용용도이외 용도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
		건폐율	•70%이하
		용적률	•300%이하
		높 이	•5층이하
		배치 및 건축선	<p><건축한계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도로변 : 3m •도로와 접한 경관녹지변 : 10m
		형 태 및 외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에서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. •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.
		색 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외부색채중 주조색은 원색을 지양하며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.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한다.